

# 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서

<b>1. 사업명</b>	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
<b>2. 사업시행자(주소, 성명)</b>	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, 진도군수
<b>3. 사업목적</b>	본 사업은 대마도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수난을 해소코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및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건위생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<b>4. 급수구역</b>	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 일대
<b>5. 계획급수</b>	계획인구 292명(급수인구 292명) / 보급률 100%
<b>6. 수원</b>	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(신설)
<b>7. 시설규모</b>	수원지(V=20,208m <sup>3</sup> ), 정수장(Q=80m <sup>3</sup> /일), 배수지(V=80m <sup>3</sup> ), 도수관로(D75mm, L=398m), 배수관로(D75mm, L=932m)
<b>8. 사업기간</b>	인가일로부터 ~ 2024. 11.

## 9. 인가조건

- 가. 「수도법」 제46조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- 나. 「수도법」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과 시설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갖추고,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친환경적이고 동파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.
- 다. 취·도수시설 등 설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발생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.
- 라. 편입되는 국·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소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.
- 마. 「수도법」 제17조에 따라 설치인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,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완공 시 수질 검사를 이행하여야 함.
- 바. 환경부 검토의견 이행조건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.

2022년 11월 일

진도군수